○專門委員 沈玩澤 釜山直轄市沙下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매각시에 매각대금의 분납 가능사항을 추가시켜 매각이 용이하도록 하고 매각대금, 대부료, 사용료 등의 연체요율을 인하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제22조 공유재산 매각대금 5년이내 분납가능 사항의 추가규정은

－81. 4. 30이전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300㎡이하를 건물바닥면적의 2배로 하고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사고발생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지역의 사유건물 점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하던 것을 연15% 연체요율로 하였고

○제23조2항에서는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1/3수준으로 인하하였음.

3. 검토의견

UR 대비 농촌지역 대책으로 공유농경지 대부료의 대폭적 경감,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부 지연시에 연체요율 연15%는 금융기관 일반 연체요율 연17%～19%보다 낮은 것으로 사용자에게는 부담이 경감되어 주민을 위한 행정에는 바람직한 제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비추어볼 때 장기체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정확보에 약간의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사료됨.

○專門委員 沈玩澤 다음은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檢討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1. 제안이유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구평동 마을회관 신축 취득

－위 치 : 구평동 115-2번지외 2필지의 지상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총 면 적 : 238.8㎡(72.36평)

－추정가격 : 121,000천원

3. 검토의견

상기 회관 건물은 80. 5. 8 현재의 마을회관 건물이 신축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현재의 건물을 멸실하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신축하여 노인정, 마을문고, 농수산물직판소, 회의실 등으로 활용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인 바 대지 3필지는 사유지, 국유지 및 구유지로 되어 있어 소유자의 승낙 등이 허락되면 변두리 지역인 구평동의 발전에 일익이 될 것으로 판단됨.

○委員長 金信祐 예, 沈玩澤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順序입니다.

먼저 沙下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